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

- 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,□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□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9호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□ 데이트폭력, 스토킹,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,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

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 제정, 2019. 12. 25. 시행)이 제정되었습니다.

- □ 이에 따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,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・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・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